

[별표 1의2] <신설 2016.2.11.>

교육기관의 지정요건(제12조의5제3항 관련)

구 분	강의실(m ²)	전임강사(명)	전담직원(명)
지정요건	100	2	2

비고

1.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.
2.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.